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256390(본소), 2020가단267112(반소) 판결
[정산금 청구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이가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최준기

변 론 종 결 2020. 12. 9.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666,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79,152,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21. C사업단(이하 ‘발주처’라고만 함)과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28,7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연월일 2018. 12. 31.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연월일은 2019. 4. 30.로, 공사대금은 606,814,410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총 금액에서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요양보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65%로 정하고, 준공예정일,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 등은 발주처와의 계약조건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8. 10. 18.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총 대금의 60%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E는 다시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공사를 총 대금의 54%로 정하여 재재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다른 공사대금으로, 2018. 10. 19. 128,632,500원, 2018. 12. 17. 60,000,000원, 2019. 2. 14. 55,000,000원, 2019. 2. 26. 25,000,000원 합계 268,632,5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자재 및 시공업체들에 대한 자재비, 노무비, 식대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G회사에 대한 대금 1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62,804,244원을 위 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총 공사대금 606,814,410원에서 산재보험료 4,973,030원, 고용보험료 1,068,280원, 건강보험료 3,523,967원, 연금보험료 5,082,64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0,068원, 부가가치세 55,164,946원을 각 공제한 536,741,473원의 65%인 348,881,957원(= 536,741,473원 × 65%, 원 미만 버림)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383,770,153원(= 348,881,957원 × 110%)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성대금 268,632,500원 및 직불대금 262,042,244원을 각각 공제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147,666,591원(= 268,632,500원 + 직불대금 262,804,244원 - 383,770,153원)을 정산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불내역 중 G회사에 대한 대금은 110,000,000원만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시공업체 등에 대하여 대금을 직불처리한 것은 하도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권리남용 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발주처와 새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그 변경금액의 8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신의칙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정산금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은 383,770,153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합계 268,632,500원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시공업체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등 합계 262,804,244원을 직불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147,666,591원(= 기성 공사대금 268,632,500원 + 직불대금 262,804,244원 - 공사대금 383,770,153원)을 정산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G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120,000,000원이 아니라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33, 34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G회사의 담당자(H과장)가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9. 5. 16. 110,000,000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결국 피고와 사이에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한편, G회사는 2019. 4.경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불을 청구하면서 합계 161,689,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9. 12. 11. 41,689,000원의 매출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20,000,000원으로 청구금액을 감액하였으며, 원고는 감액된 대금 120,000,000원을 G회사에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G회사의 공사대금은 120,000,000원으로 최종 정산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이 하도급법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권리남용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합의가 있을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고,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임의로 변제했을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한편, 원고는 피고의 시공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직불을 독촉받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그 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시공업체들에게 직불한 내역 중 G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내역을 모두 인정하였고(제2회 변론조서), 앞서 본 G회사에 대한 대금 직불 경위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직불처리가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였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결한 권리행사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지연으로 증액된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발주처와의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의 8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증언 및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47,666,5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이 늦어져 노무비, 경비 등 공사비가 증액되자,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수차례 원고를 찾아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발주처와 체결한 변경계약금의 80%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구두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606,814,410원의 80%인 485,451,528원(= 606,814,410원의 $\times$ 80%)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268,632,500원 및 하도급업체 직불금 137,666,591원을 공제한 나머지 79,152,437원(= 485,451,528원 - 268,632,500원 - 137,666,591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I의 증언 및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발주처 대금의 80%까지 증액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정